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 1999. 9. 8 조례 제16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의 수질향상 방안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안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

2. 시의원

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의 정기 검사 실시 및 공표
2. 취수의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3.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 연구
4.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5. 상수도 수질민원의 해소대책
6.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사항
4. 위원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수질검사에 따른 시료채취, 현장 방문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양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